

建議書

林業團體의 育成과 林木育種事業의 效果擧揚에 關하여

희망에 찬 76년의 新春에 즈음하여
 治山綠化四年次 事業을 계획하시기에 奔忙하신 廳長
 님의 勞苦에 對하여 眞心으로 感謝드립니다.
 우리나라의 林業이 날로 赫赫한 發展을 거듭하고 있
 음은 오직 平素 林政에 對한 責下의 分명한 座標設定
 과 不斷한 勞力의 結果라고 思料됩니다.
 韓國林學會에서는 지난 夏季總會때에 “韓國林業團體

의 發展方案과 林木育種事業의 現況과 展望”에 關한
 심포지움을 開催한바 있으며, 이때에 發表된 內容을
 要約하여 “林業團體의 育成과 林木育種事業의 效果擧
 揚”에 一助가 되기를 願하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建
 議합니다.

韓國林學會 會長 任 慶 彬

I. 林業團體의 育成에 關하여

1. 緒 言

山林事業을 積極的으로 發展시키려면 山林政策樹立
 에 參與하고 또한 樹立된 政策實行을 直接 擔當하며
 山主와 山林關係者의 利益增進을 도모하는 山林團體의
 組織 育成이 필요합니다.

이와같은 役割을 하기 위하여 組織된 團體가 系統的
 山林組合體인데, 山林組合體의 任務를 具體的으로 列
 擧하던 다음과 같습니다.

- ① 山林事業 全般에 걸친 技術指導啓蒙
- ② 國家의 林業政策의 協力
- ③ 山主와 山林關係者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向上

그런데 우리나라에 組織된 山林契, 山林組合, 山林
 組合聯合會가 위에 적은바와 같은 任務를 다하지 못하
 고 도리어 組合員에게 晧를 끼치고 있지 않는가하는
 批判的 意見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外國의 山林組
 合의 概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山林組合體의 現況
 과 問題點을 檢討하여, 앞으로의 山林組合組織體의 體
 制와 運營改善에 대한 意見을 建議하고자 합니다.

2. 山林組合의 一般的 概念과 유유럽 의 山林組合 概況

1) 山林組合의 概念

一般的인 山林組合의 概念은 「一定地域內에 있는 山

林所有主들이 經濟的, 社會的 地位를 높이기 위하여
 山林經營의 合理化를 위한 各種 事業活動을 하는 一種
 의 協同組織體이다」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山林組合은 山主들의 心要에 의하여 組織
 되고 山主들의 利益이 되는 일을 協同的으로 해나가는
 組織이므로, 外部의 壓力이나 權力의 干涉에 의해서
 組織되고 活動을 하는 組織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런데 歷史的으로 山林組合의 發展過程을 살펴보
 면, 여러가지 理念을 가지고 展開된 하나의 社會運動
 또는 汎國民運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組織되었거나,
 혹은 그러한 運動의 結果로서 組織된 例가 흔히 있습
 니다.

2) 獨逸型 山林組合

山主 스스로의 內發的 契機에 의한 自主的 組合이라
 기 보다는 國家의 山林保護, 山林施業統制上 필요에
 의하여 權力의 권유로 組織되고 發展해온 山林組合型
 을 말합니다.

이 型의 山林組合은 強制設立, 強制加入制度를 擇하
 는 경우가 많고, 事業內容도 共同經營案에 의한 林木
 保育, 山林保護, 林道の 建設維持등인데 독일, 오스트
 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이러한 形態의 山林
 組合을 볼 수 있습니다.

3) 美國型 山林組合

一般經濟社會의 協同組合과 그 性格이 類似한 組合

으로서, 林產業者들이 經濟的協同에 의한 利益을 얻기 위하여 自生的으로 組織된 組合입니다. 組合의 加入脫退가 自由이고 組合의 事業內容도 經濟活動이 主고 山林保護, 技術指導같은 일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4) 折衷型 山林組合

半官半民的 性格을 가진 山林組合으로서 國家의 行政的 財政的 後援을 받으면서 苗圃經營에 의한 苗木生産供給, 植栽指導, 蓄積調査, 經營案編成, 技術指導, 木材市場에 관한 資料蒐集, 林木賣却에 관한 助言 등 넓은 범위의 事業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山林土木測量, 排水工事, 林道設計 및 建設等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形態의 山林組合은 핀란드에서 잘 발달되고 있습니다.

3. 日本의 山林組合

二次大戰前까지는 日本의 山林組合도 強制設立에 強制加入制를 採擇한 獨逸型 山林組合이었으나 二次大戰後 1951年 山林組合의 形態를 바꾸었습니다. 即 組合의 任意設立制, 脫退의 自由, 施業案編成과 管理統制業務等의 行政的 聯關性 廢止, 經濟事業의 擴大 등을 통하여 協同組合 原理에 바탕을 둔 人的 結合體로서의 組織形態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山林組合을 組織目的에 따라 施設組合과 生産組合으로 나누었습니다.

施設組合은 協同施設을 利用한 經濟事業을 통해서 組合員의 利益을 도모하고 生産組合은 組合스스로가 山林을 所有하여 山林生産을 하는데 組合員은 金錢 또는 山林을 出資하여 協同的 山林生産을 합니다.

施設組合員의 資格은 ①地域內의 山林所有主, ②組合施設의 利用者로 되어 있고, 生産組合員은 ①地域內의 居住者로서 金錢을 出資한 者와 ②地域內의 山林을 現物出資한 者가 됩니다.

1) 施設組合의 事業內容과 現況

事業內容은 ①指導事業, ②山林의 受託施業, ③山林經營 信託의 引受, ④購買事業, ⑤販賣事業(林產物以外의 販賣도 可能), ⑥利用事業(林道設置, 防火線設置, 福利厚生施設, 林產物과 그 以外의 產物의 運搬加工), ⑦信用事業(事業資金, 生活資金의 貸付, 但 貯蓄事業은 除外), ⑧轉用林地의 買入賣渡事業, ⑨不在山主의 山林經營, ⑩休養施設의 設置 및 管理(組合員의 山林에 限함)등입니다. 그리고 施設組合의 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組合數 約 2,500個, ②組合員數 180萬名 ③山林所有主 組合加入率 約 60%, ④組合管掌山林面積 約 1,200萬 ha, ⑤組合加入面積率 72%, ⑥一個組合員數 約 700名, ⑦一個組合의 管掌山林面積 4800ha.

2) 生産組合의 事業內容과 現況

生産組合의 主要事業은 ①直接的인 山林經營, ②觀賞樹生産, ③山林을 利用하는 農業生産等입니다.

組合現況은 ①組合數 950個, ②組合管掌山林面積 11萬5千ha, ③一個組合의 山林面積 120ha이고 組合의 形態는 部落有林의 共同經營을 하는 組合이 410個, 市, 町, 村合併에 의하여 部落에 拂下된 山林을 共同經營하는 組合이 285個, 入會權近代化法의 特惠에 의한 現物出資形式의 組合이 384個로서 生産組合은 主로 過去의 部落林이 단지 형태를 바꾼 것이 大部分입니다.

4. 우리나라 山林組合의 發展過程과

現況

1) 山林組合의 發展過程

우리나라에서 山林組合이 생긴 것은 1913年인데 그 당시 民有林에 대한 行政機構가 없었으므로 民有林의 指導監督을 하기 위하여 散發的으로 組織되었으나, 1926年 山林組合에 國庫補助를 할 수 있게 되면서 全國的으로 山林組合이 組織되었습니다. 그런데 山林組合의 經費(職員의 俸給包含)를 國庫補助와 組合費로 充足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職員이 늘어남에 따라 組合費를 많이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이에 따르는 부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1932年에 山林組合을 폐지하는 代身 1933年부디는 地方稅인 林野稅를 새로 徵收하여 이것을 財源으로 民有林 指導를 擔當할 職員을 採用하였습니다.

解放後 1950年 1월에 社團法人 中央山林組合 聯合會가 設立되면서 下部組織體인 山林組合, 山林契가 組織되어 山林組合制度는 다시 活動을 始作하였습니다. 1951年에 公布된 山林保護臨時措置法에 의하여 山林契는 公法人의 組織體가 되었고 1961年에 現行 山林法이 制定 公布됨에 따라 山林組合體는 公益과 組合員의 利益을 도모하는 法人體로 되었습니다. 그 후 組合의 系統化, 組織體에 관한 法의 補完, 行政機關과의 連繫性의 深化, 經濟事業擴大를 도모하여 많은 發展을 이룩한 今의 組合體의 現況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 組合體의 組織狀況

①山林契數 21,295個, ②山林契員數 2,326,284명, ③一契當 平均契員數 110名, ④山林契員中 山林所有者比率 46%, 非山主比率 54%, ⑤自立山林契 6,589個(31%), 自助山林契 8,116個(38%), 基礎山林契 6,590(31%), ⑥山林地域 山林契 6,164個(38%), 中間地域 山林契 7,605個(35%), 平野地山林契 4,018個(20%), 都市附近山林契 658個(3%), 漁村山林契 850個(4%), ⑦市, 郡山林組合數 141個, ⑧組合長, 常務理事等 有給職員總數 1,242명, ⑨大韓山林組合聯合會 職員 141名(一個事務所 포함).

3) 組合體의 財政狀況

①山林契貸付林 70,951ha, ②山林契分收契約林 51萬ha, ③山林契林野 16,399ha, ④山林組合所有林野 1,145ha, ⑤市, 郡山林組合 貸付林 700ha.

5. 山林組合體 運營의 問題點

解放後 新出發된 山林組合體는 어려운 與件가운데서 도 앞서 말한바와 같이 組織財政面에 있어서 또는 運營에 있어서 많은 發展을 거듭하여 燃料林의 養苗와 造成, 山林調查 및 營林計劃編成, 포고種菌培養과 栽培技術指導, 山林副産物의 市場開拓, 分收林造成, 大團地造林參與 및 全般的인 山林經營 指導等 廣範圍한 領域에 걸쳐서 山林事業發展에 寄與한 功은 至大한 바 있으나, 組織, 指導體制, 財政 및 運營面에 있어서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습니다. 問題點가운데서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點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1) 地域의 特性이나 構成員의 事情을 考慮하지 않은 劃一的인 山林契構成: 즉, 都市, 都市近郊, 平野地等에 대한 地域의 特性과 地域內의 世帶主의 事情을 考慮하지 않고 어떤 경우이건 劃一的인 山林契를 組織하고 있으므로 山林契員間의 利害關係가 一致하지 않으므로 協同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多數集團에 의한 協同作業의 不信: 즉, 多數集團에 의한 協同作業의 經驗不足으로 인하여 協同作業自體에 대하여 회의와 不信을 가지고 있으므로 一括의인 協同에 의한 共同作業이 自主的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3) 經營基盤의 微弱: 즉, 私有林의 經營規模가 零細하고 山林契의 組織對象地域이 狹少하므로 山林契는

經濟協同의인 利益團體로 自立해가기가 어렵습니다.

4) 現實의인 利益의 缺如: 즉, 앞으로 收益을 거둬 분收造林같은 經濟活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直接的이고 現實의인 收益이 없으므로 組合(山林契) 構成員의 參與意慾이 낮습니다.

5) 指導者와 技術者의 不足: 즉, 退職公務員을 山林組合 任員으로 採用하고 있는 事例가 많아 指導體制에 있어서나 專門的인 技術面에 있어서 바람직한 指導體質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6) 山林組合에 대한 社會的인 認識不足: 즉, 山林組合(山林契)은 山林의 特殊性에 基因하여 組織된 公益의인 團體로서 汎國民的인 社會運動(愛林綠化運動)의 母體의인 性格이 있다는 것을 政府나 一般社會에서 잘 認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積極的인 行政指導와 財政의 支援의 缺如: 즉, 山林經營基盤이 微弱하고 單位山林面積當의 收入이 적은 現實情에서는 앞으로 山林組合이 自立할 수 있을 때까지 汎國民的인 公共團體를 支援하는 見地에서 行政府의 積極的인 行政指導와 財政指導가 必要한데 現在에 대한 支援이 適切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8) 代執行能力不足: 즉, 山林法과 山林開發法에는 山林組合體에서 山林事業을 代執行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現在와 같은 山林組合體의 財力, 技術, 人力을 가지고서는 이와같은 山林施業의 代執行業務를 遂行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6. 山林組合體의 組織, 運營, 改善 方案에 관한 具體的인 建議內容

위에서 提示한 山林組合體의 當面 問題點을 解決하고 山林組合體의 制度와 運營을 改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方案을 提示합니다.

1) 山林契

가. 改編方向——生産組合

山林契를 造林生産과 山林保護業務를 위주로 하는 生産單位組合으로 改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改編方法

① (組織)

山林契는 原則的으로 20ha이하의 山林所有者(門中山은 面積制限無)와 不在山主(面積制限없음)로 構成되地域居住 非山主로서 山林生産에 參與하고자 하는 者를 構成員으로 한다. 但 都市, 都市近郊, 山林面積이

작은 平野地帶에서는 別途의 愛林契 같은 것을 組織케 할 것입니다.

② (出資)

山主는 山林을 出資하고(勞力出資도 兼할 수 있음) 非山主는 勞力 또는 金錢을 出資하여 協同經營하도록 할 것입니다.

③ (分收)

生産組合의 協同經營의 分收比率는 出資比率로 할 것입니다.

④ (組織對象地域과 分團組織)

生産組合(山林契)의 組織對象地域을 3~5個 里로 넓히되 組合員의 協同林業推進은 山林規模, 山林分布 등을 고려하여 3~5世帶의 山主 또는 山主와 非山主의 分團組織에 의하여 遂行하도록 할 것입니다.

⑤ (中規模以上の 山林所有主에 대한 措置)

生産組合에 加入하지 않는 中規模以上(20ha以上)의 山主는 市·郡山林組合에 加入하도록 할 것입니다.

⑥ (生産組合과 山林組合과의 關係)

生産組合도 市·郡山林組合의 特殊組合員으로 加入케 할 것입니다.

⑦ (生産組合管掌山林의 免稅)

生産組合이 經營하는 山林에 대해서는 財産稅(앞으로 財産稅 新設을 前提하고)를 賦課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⑧ (生産組合의 運營)

(가) 生産組合(山林契)의 山林事業을 새마을 事業의 一環으로 推進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生産組合(山林契)은 上部指示에 의하지 않고 內部發生的인 民主方式으로 運營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委託林, 分收林의 設定管理도 3~5組合員으로 分團해서 實施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 山林을 公有物視하는 意識構造를 없애기 위하여 組合員이 아닌 者는 林産燃料, 綠肥, 牛馬草를 山林에서 採取利用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마) 組合員의 技術指導를 強化하기 위하여 새마을 학교, 농민학교등을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바) 組合員의 現實의인 利益이 있는 生産事業(苗木有實樹, 速成樹, 副産物)을 積極推進해야 될 것입니다.

(사) 生産組合員에 對해서는 營林計劃作成義務를 免除하고 山林生産活動을 長期施業方針에 따르는 年間事業計劃書에 의해서 實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山林組合(市·郡)

가. 改編方向——施設組合

協同施設을 通하여 組合員의 利益을 도모하는 순수한 施設組合으로 할 것입니다.

나. 改編方法

① (組織)

原則으로 20ha以上の 山主와 山林事業에 關係있는 個人, 團體, 法人 및 組合利用者로 構成하고 組合에 施設部와 生産部를 두고 施設部는 協同施設事業을 生産部는 生産組合의 指導業務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② (組合員의 義務와 惠擇)

山主인 組合員은 반드시 個別的 營林計劃을 作成하도록 하고, 營林計劃을 作成한 山主에게는 各種 金融, 稅制(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등)上的 惠擇을 주고 아울러 經濟的 支援을 해야 될 것입니다.

③ (組合의 事業)

組合의 活動範圍을 山林의 經營指導, 山林施業의 受託, 信託의 引受, 販賣(林産物以外的 山林事業用 物資와 기구 포함), 購買, 運搬(林産物外도 包含), 加工(林産物外도 包含), 利用, 信用事業(資金, 基金, 分配貯蓄引受) 등으로 넓히고 山林施業의 代執行事業을 強化해야 할 것입니다.

④ (組合費)

組合員은 山林面積과 山林施業內容에 따라 一定한 組合費를 納付케 해야 할 것입니다.

⑤ (稅金의 免除)

山林組合에는 各種 稅金(財産稅, 所得稅, 營業稅等)을 免除하고 組合員에게는 山林關係 各種稅金을 輕減해야 할 것입니다.

⑥ (經營費의 補助)

組合活動에 의한 總收入에 따르는 一定比率의 國庫補助를 하여 優秀한 指導者와 技術者를 確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山林組合聯合會——組合部나 開發部

가. 改編方向

從前과 같은 業務를 擔當하는 組合部와 奧地林開發과 集團의인 大團地造林을 代執行하는 營林公社의 機能을 가진 開發部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 改編方法

① (組合部の 事業)

組合部の 主要事業을 다음과 같이 擴大할 것이 요망됩니다.

(가) 苗木의 生産需給

(나) 副産物의 蒐集, 斡旋 및 貿易

(다) 營林計劃의 編成指導 및 林業經營指導

(라) 林業基金의 運營

② (開發部の 事業)

開發部는 다음과 같은 事業을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
다.

(가) 奧地林開發

(나) 大園地造林

(다) 水源涵養林造成

(라) 公有林의 官行造林代行

(마) 林道開發

(바) 其他 各種 山林事業의 調査, 設計 및 建設
事業

II. 林木育種事業의 效果舉揚에 關하여

林木育種 20年의 발전을 돌아켜 보고 世界의 林木
育種의 最近의 發達과 그 動向을 살펴서 우리나라의
切迫한 林産資源의 早期造成에 이바지 하기 爲한 林木
育種의 今後 方向과 方法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建議
합니다.

1. 育種對象樹種의 集約化

林木育種의 革新的인 成果거양을 위해서는 育種對象
樹種數를 12個 樹種 정도로 縮小함으로써 事業集中에
依한 成果舉揚의 實效를 期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育種事業의 主軸

林木育種은 選拔育種과 採種園 造成에 主軸을 두도
록 하의 有望形質의 結合과 雜種強勢의 利用價値가 높
을 때에 交雜 育種法을 適用함이 效果의 일 것입니다.

3. 交雜育成品種의 造林地帶 區分活用

優秀한 形質 結合 雜種 *Pinus rigi-taeda*의 種子生産
은 現存試驗 植栽地를 採種林으로 管理 使用하되 다음
과 같이 造林地帶를 區分하도록 함으로서 其效果를 거
두도록 할 것입니다.

1) 南部地域(北緯 35°20' 以南)

海拔 600m 以下인 곳

肥沃한 山麓에는 F₂

地力 中인 山腹에는 F₁×Wind

地力下인 北面傾斜地 除外

2) 中部地域(北緯35°21'~36°20')

海拔 400m 以下인 곳

肥沃한 山麓에는 F₂

地力 中인 山腹에는 F₁×Wind

地力 下인 北面傾斜地는 除外

3) 中北部地域(北緯 36°21'~37°20')

海拔 200m 以下인 곳

肥沃한 平坦地에는 F₂

地力 中인 山腹에는 F₁×wind

또는 F₁×*rigida*

地力 下인 北面傾斜地는 除外

4) 北部地域(北緯 37°21'~38°00')

海拔 100m 以下인 곳

肥沃한 平坦地에는 F₁×wind

地力 中인 山腹에는 F₁×*rigida*

地力 下인 北面傾斜地는 除外

但, 造林은 必히 1-0年生으로 하고 施肥 間伐을 施行
하도록 할 것입니다.

4. 리기테다소나무의 耐寒性 增大 및 優秀性 提高

×*Pinus rigitaeda*의 耐寒性 增大를 爲해서는 圃地에
서 選拔된 耐寒性 苗木을 材料로 하는 clone complex
育成法 活用을 試圖하는 同時에 다음에 오는 世代에서
그 優秀性을 一層 提高하기 爲해서 相互循環·選拔法
을 適用하도록 할 것입니다.

5. 改良포푸라의 雜種強勢度의 增大

優秀한 雜種強勢 雜種인 ×*Populus alba glandulosa*
및 ×*Pnigra. maximowiczii*의 優秀性을 一層 增大시
키기 爲해서 兩親 樹種들의 出現하는 交雜組合 優良木
을 國內外에서 可及의 多數 選拔하여 育種集團을 一層
擴大하여서 더욱 優秀한 雜種強勢를 發見 活用하도록
努力할 것입니다.

6. 耐病性 品種 育成의 短期化

잣나무 털녹병 耐病性 品種 育成은 15年生 内外의 被害 激基地에서 耐病性 個體를 選拔하여 人工接種에 依한 次代檢定을 수반하는 採種園 造成의 傳統的인 方法과 아울러 人工接種의 反覆實施를 수반하는 耐病性 選拔個體의 挿木에 依한 clone complex 育成法을 併行함으로써 今後 15年 内外에 높은 改良效果(90% 耐病性 苗木 生産) 획득을 企圖할 것입니다.

7. 有實樹 品種 改良 事業

有實樹 育種은 밤나무 및 호도나무類에 力點을 集中하도록 하되 밤나무는 主로 交雜에 依한 品質의 改良과 耐蟲力 強化에, 호도나무類 育種은 選拔 및 導入에 依한 耐寒性 增大에 各各 力點을 두어 實施하도록 할 것입니다.

8. 選拔育種에 對하여

1) 現在 秀型木을 選拔하고 採種園을 造成하고 있는 데 秀型木의 選拔基準를 多少 緩化시켜서 그 數를 增加시켜야 할 것입니다.

2) 選定된 秀型木은 그 調査와 保存이 더욱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秀型木 기록 대장을 完備하여야 하고 秀型木이 서 있는 그 集團에 對한 調査도 아울러 實施하여야 할 것입니다.

3) 秀型木이 接木이나 挿木으로 번식될때 그 苗의 生産力이 不振한데 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研究가 實施되어야 하고 포트 養苗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採種園에 있어서 clone의 配植이 事前에 定해지고 配植圖가 完備되어야 할 것입니다.

5) 採種園의 管理(除草, 덩굴치기, 病蟲害 驅除 등)에 豫算과 人員을 增加할 것이 要求 됩니다.

6) 採種園 담당 研究官 研究員이 훨씬 더 補強될 必要가 있습니다.

7) 現 採種園의 立地條件이 대단히 不適當한데 採種園이 民族의 資産으로서 얼마나 重要한 것인가를 再認識하고 國土中에서 가장 좋은 곳이 採種園의 造成地로 尙당되도록 充分히 配慮할 것이 요망 됩니다.

8) 우리나라의 地形과 地勢를 감안할때 一箇 園地로서 넓은 面積을 가진곳이 적을 것이므로 管理에 난점은 있을지 모르나 多少 소규모로 더 분산하는 傾向을 受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9) 採種園의 定義에서 多少 벗어 날지는 모르나 地域의 으로 우수한 樹木의 集團이 있으면 그 곳에서 좋은 個體를 選拔하고 家系別로 養苗해서 比較의 좋은 立地를 擇하여서 造林해두고 그 뒤 그 것을 評價할 수 있도록 配慮할 것입니다.

10) 遺傳子保存林의 造成은 未來의 選拔育種의 資料가 된다는 뜻에서도 하루 속히 着手하여야 될 것입니다.

9. 導入育種에 對하여

1) 導入育種은 이미 이 方面에 專門家의 經驗과 學識으로 어느정도 其 成功 程度가 豫測되는 것이므로 浪費가 적은 方便으로 實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林業은 事實 導入된 樹種의 惠澤을 크게 보고 있으며 새로운 樹種의 導入도 생각할 수 있으나 기왕에 導入된 樹種의 品質을 向上시키기 爲한 導入育種은 더큰 意義를 지닌다고 사료됩니다.

2) 日本에서 주요 造林을 個體別로 또는 地別로 導入해서 試驗한다는 것은 대단히 重要한 일이 될 것입니다.

10. 基礎研究의 方向

育種技術의 發達에 直結되는 遺傳 生理·生態에 關하여 基礎研究를 계속 力行함으로써 品種改良 技術의 革新을 가져 오는 基礎를 마련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期待되는 成果 擧揚을 爲한 必須

要件의 行政의 支援

以上の 모든 事項이 實踐될 때에는 選拔育種에 있어서 是 生長力에 있어서 10~30%, 특히 赤松林의 粗惡林分에 對比할 때에는 100% 이상의 材積의 增收를 交雜育種에 있어서는 形質結合의 경우 200~300% 材積增收, 雜種強勢 利用의 경우 兩親樹에 比하여 5~6倍의 材積增收를 가져오게 됨이 이미 實地로 經驗되고 있으며 耐病蟲性 育種에 있어서는 70~100%의 耐病蟲性 品種이 育成된 바가 先進國에서 實證되고 있어서 實로 用材樹 生産에 一大 革新을 結果케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이의 實現에는 研究人力, 研究者의 能力 向上, 必要한 施設과 必要한 예산의 確保가 先行되는 것이 必須要件이 될 것입니다.